#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 2869

제안일자: 2021. 12. 17.

제 안 자 : 도시계획관리위원장

#### 1. 수정이유

○ 침입범죄 외에도 범죄의 유형이 다양한 점, 범죄취약지역 외에도 범죄예방 강화구역을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점을 고려하여, 범죄의 종류와 범죄예 방사업의 구역을 확대함.

#### 2. 수정의 주요내용

-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에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사업을 추가하며 (안 제8조제3호),
- 침입범죄 예방사업을 범죄 예방사업으로 확대한다(안 제8조제5호, 안 제9조).

##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 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8조제3호 중 "범죄취약지역"을 "범죄취약지역 및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"으로 한다.

안 제8조제5호 중 "침입범죄"를 "범죄"로 한다.

안 제9조 중 "침입범죄에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"를 삭제한다.

제11조(종전의 제10조) 중 "서울지방경찰청"을 "서울특별시경찰청" 으로 한다.

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       | 수 정 안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제8조(범죄예방 도시           | 제8조(범죄예방 도시                | 제8조(범죄예방 도시환        |
| 환경디자인 사업)             | 환경디자인 사업)                  | 경디자인 사업)            |
| 3. 범죄취약지역 도           | 3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| 3 <u>吳</u>          |
| 시환경디자인 사업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범죄예방 강화구역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에 대한</u>         |
| <u> &lt;신 설&gt;</u>   | <u>5. 방범시설 등 <b>침입</b></u> | 5 <u>범죄를</u>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범죄를 예방하기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위한 사업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<u> &lt;신 설&gt;</u>   | 제9조(방범시설 등 설               | 제9조(방범시설 등 설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치 지원) 시장은 침                | 치 지원) <u>시장은 방범</u> |
|                       | 입범죄에 취약한 지                 | 시설 등의 설치에 필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역에 대하여 방범시                 | 요한 비용의 전부 또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설 등의 설치에 필                 | 는 일부를 지원할 수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<u>요한 비용의 전부</u>           | <u>있다.</u>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또는 일부를 지원할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<u>수 있다.</u>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<u>제10조</u> (협력체계 구축) | <u>제11조</u> (협력체계 구축)      | 제11조(협력체계 구축)       |
| (생 략)                 | 시장은 범죄예방 도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시환경디자인 추진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을 위하여 서울특별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시교육청, 서울지방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검찰청, <u>서울지방경</u>          | <u>서울특별시경</u>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<u>찰청</u> 등과 협력체계          | <u> 찰청</u>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를 구축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
#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"침입범죄"란 사람의 주거에 대한 침입을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.
- 5. "방범시설"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, 방범창, 방범용 망창, 방범용 창살,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.

제8조제3호 중 "범죄취약지역"을 "범죄취약지역 및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8조제5호를 제6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방범시설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

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,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) 시장은 방범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종전의 제10조) 중 "서울지방경찰청"을 "서울특별시경찰청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되      | 제2조(정의)                 |
|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~ 3. (생 략)           | 1. ~ 3. (현행과 같음)        |
| <u>&lt;신 설&gt;</u>      | 4. "침입범죄"란 사람의 주거에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대한 침입을 포함하는 범죄를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말한다.</u>             |
| <u>&lt;신 설&gt;</u>      | 5. "방범시설"이란 침입범죄 등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, 방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범창, 방범용 망창, 방범용 창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살,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다.</u>               |
| 제8조(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       | 제8조(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       |
| 사업) 시장은 범죄로부터 안전        | 사업)                     |
| 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다음 각 호의 범죄예방 도시환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다.                      | <b>.</b>                |
| 1.・2. (생 략)             | 1.•2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|
| 3. <u>범죄취약지역</u> 도시환경디자 | 3. <u>범죄취약지역 및 범죄예방</u> |
| 인 사업                    | <u> 강화구역에 대한</u>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. (생 략)                | 4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|
| <신 설>                   | 5. 방범시설 등 범죄를 예방하       |

 5. (생 략)

 <신 설>

<u>제9조</u> (생 략)

제10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, 서울지방경찰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제11조 (생략)

| 기 위한 사업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u>6</u> . (현행 제5호와 같음)  |
| 제9조(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) 시      |
| 장은 방범시설 등의 설치에 필         |
| 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        |
| 지원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|
| <u>제10조</u> (현행 제9조와 같음) |
| <u>제11조</u> (협력체계 구축)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서울특별시경찰청 -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

제12조 (현행 제11조와 같음)